

「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」 제44조에 의한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며 ‘복지위원’ 조항이 삭제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이 사라진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며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역할이 중복되는 <복지위원>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, 관련된 우리 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.